

제406회 임시회  
' 23. 1. 18.(수)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이상정 의원 등 7인

## 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 : 2023년 1월 4일

○ 회부일자 : 2023년 1월 5일

## 3. 제안이유

○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법 인용조항 및 일부 용어·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4. 주요내용

○ 장애인 학대와 피해 장애인에 대해 정의함. (안 제2조)
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라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도지사의 예방 및 신고 관련 조치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.

(안 제4조의2)

○ 시행계획에 ‘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·지원에 관한 사항’을 포함하도록 규정함. (안 제7조)

○ 장애인인권교육 내용에 ‘피해 장애인 보호·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항’을 포함하도록 규정함. (안 제9조)

## 5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김대진)

## 가. 제출배경

-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일부 용어·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.

## 나. 주요내용 검토

- **안 제1조**에서는, 목적규정에서 법률을 인용한 조문을 삭제하고, 같은 조 하단의 문구 중 ‘차별과 인권 침해’를 ‘차별과 학대 등 인권 침해’로 정비하였음.
  - 먼저 법률 인용 조문의 삭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,
    - 법제처는 ‘자치조례’의 경우, ‘위임조례’와 구분될 수 있도록 목적규정에서 불필요한 법률 인용 문구를 삭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.
    - 본 조례는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한 위임조례가 아닌 도 자치사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자치조례에 해당하는 바, 인용 문구의 삭제는 문제가 없음.
  - 다음으로, 일부 문구 정비와 관련해서는,
    -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UN장애인권리협약<sup>5)</sup> 전문에서 ‘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인간의 천부적 존엄성 및 가치에 대한 침해’로 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인간의 천부적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, 즉 인권침해의 범주로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문구를 ‘차별과 학대 등 인권침해’로 변경하는 것은 오히려 의미상 정확한 표현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**안 제2조**에서는, 일부 문구,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‘장애인 학대’와 ‘피해 장애인’에 대한 용어 정의를 신설하였음.
  - **안 제2조제1호** 및 **제3호**에서는,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(법제처)에

5) UN장애인권리협약: 제61차 UN총회에서 회원국 192개국의 만장일치로 의결(2006. 12. 13.)

따라 ‘초래하는’ 을 ‘주는’ 으로, ‘통상적으로’ 를 ‘일반적으로’ 로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며,

- ‘장애인 학대’ 에 대한 정의는 「장애인 복지법」 제2조제3항에 따른 것으로 타당하며, ‘피해 장애인’ 또한 ‘장애인 학대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장애인을 말한다’ 로 정의하여 의미상 문제가 없음.

○ **안 제4조의2**는,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에 따라 법령의 범위에서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○ **안 제7조제2항**에서는, 매년 수립하는 시행계획에 ‘장애인 학대 예방 및 피해 장애인 보호·지원 방안’ 을 포함하도록 규정하였고, **안 제9조제3항**에서는, ‘피해 장애인 보호·지원 및 2차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항’ 을 도 소속 공무원, 장애인 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계획에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으로, 이는 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4(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와 절차), 제59조의10(장애인 학대의 예방과 방지 의무), 그리고 「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」 제32조(괴롭힘 등의 금지) 등 법률에 규정된 장애인 대상 학대·범죄, 괴롭힘과 관련한 신고 절차, 예방 및 방지 등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육과 적절한 시책 강구 의무에 따른 것으로 타당함.

○ **안 제12조제1항**은, 인용 법조항인 ‘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9’ 를 ‘「장애인복지법」 제59조의11제2항’ 으로 변경한 것임.

- 이는 「장애인복지법」 개정에 따른 것으로 문제가 없음.

○ **제23조(시행규칙)**를 삭제함. 본 조항은 규칙으로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규정이 아니라 집행명령에 해당하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보충적이거나 절차적인 사항 등 조례를 현실적으로 집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 사항만 규정할 수 있고 개인의 권리·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·보충하거나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새로운 내용을

규정할 수 없음.

- 따라서 본 조항을 두지 않더라도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<sup>6)</sup>에 따라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바, 본 조항을 삭제한 것은 문제가 없음.

## 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학대 예방 및 학대 피해 장애인들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 및 일부 용어·문구 등을 정비하려는 것으로,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집행부 협의 및 조례안 예고 등을 거친 바 절차상으로도 타당하다고 판단됨.

---

6) 「지방자치법」 제29조(규칙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.